

③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1.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 21

다. 의안번호 : 제2005 - 63호

라. 상정일자 : 2005. 12. 5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재료비등 실비만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학교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2005.5.27 계약기간 3년, 연간 대부료 2,814,300원으로 대부계약 체결한 것으로 당초 무상으로 계약체결 방침이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 의해 유상대부로 변환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관내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부계약 체결 협상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7조의 내용중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권력 관계가 아닌 평등의 위치에서 민법의 계약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자치단체의 유사조례에서도 계약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시설은 상시 관리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안 제10조의 위탁자의 의무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2조의 위탁취소 조항 중 시설소유자인 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 체결이 사정에 의거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도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항 내용중에 “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이 해지 된 때”를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기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⑤생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⑤생략 ⑥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의 취소) ①생략 1. ~ 4. 생략	제12조(수탁의 취소) ①생략 1. ~ 4. 생략 5.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